

(미래정책연구실, 2009.11.09)

1. 기능성식품 표시 규제 관련법 제정 동향

1) The Economist (2009.10.29) 주요 내용

- 식품의 기능성표시에 대한 문제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10.20일 식품 라벨상의 기능성표시에 대한 규제를 재점검하고 내년 초에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EU는 2006년에 시작된 입법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름.
- EU의 입법은 영양 및 건강강조기능성표시(nutrition and health claims)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영양강조기능성표시(nutrition claim)는 제품에 칼슘, 비타민 등 특정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
 - 건강강조기능성표시(health claim)는 표시된 영양 성분이 제공하는 효과에 관한 것으로, 예컨대 함유된 칼슘이 “뼈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함”이라고 표기하는 것임.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영양 및 건강강조기능성표시에 대한 각국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줄 것을 회원국들에 요청함.
 - 영양강조기능성표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통제하기가 용이함. 따라서 이 부분은 기존 법률에 부록으로 내용이 추가됨.
 - 하지만 건강강조기능성표시는 법률에 포함되기 전에 유럽식품안전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심사자들의 평가를 받도록 보내진 상황이어서 큰 이슈로 남아 있음.
- 10.1일 EFSA는 총 4천여 건의 심사대상 건강강조기능성표시 중 523건

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중 2/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 일례로, 일상적인 코코아 추출물의 섭취가 정상적인 체중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내림.
- 식품 규제 관련 컨설팅회사인 European Advisory Services의 컨설턴트 Miguel Fernandes da Silva는 이러한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함.
- 심사대상인 4천건의 기능성표시 중 절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까지 보장되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EFSA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임.

○ EU의 법 제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오메가-3가 있음.

- 오메가-3 지방산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연구 보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으며, 오메가-3 섭취시 우울증, 심장혈관 질병 등의 발병률 감소 효과, 임산부 섭취시 태아의 IQ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식품기업들은 이러한 효과를 판매실적으로 최대한 연결하기 위해 유아용 우유부터 마가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에 오메가-3를 표기하고 있음.
- 하지만, 모든 오메가-3가 이와 같은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님. 좋은 제품은 생선 등 고가의 원료에서 추출되는 반면,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은 저렴한 아마 종자나 대두 등의 식물에서 추출됨.
- 다양한 종류의 오메가-3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우리나라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강기능식품 생산·유통·판매·승인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 법의 취지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하는 산업진흥과 동시에 건강식품의 안전성과 유통·판매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규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업계 종사자들은 이 법이 산업진흥보다는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승인받는데 있어 애로가 있음을 밝히기도 함.
- 한편, 기존의 농림부에서 식품정책의 추가로 확대된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을 진흥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승인 절차 강화 및 유통·판매 단계의 규제를 통한 안정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에도 정책적 비중을 두지만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 정책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자 함.
- 미국의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 산업진흥의 측면은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도 두 가지 상호 대립적인 측면을 원만히 조정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업계를 포함한 국민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업계·소비자·관련정부기관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미국, 신규 영농인 지원 계획

1) USDA 보도자료 (2009.11.03) 주요 내용

- USDA는 11.3일 ‘농축산업 창업 개발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을 발표함.
 - 지정된 29개 기관을 통해 1,700만 달러의 예산 지원
 - 이번 프로그램은 신규 농업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됨.
- 이번 예산 지원은 USDA 산하의 국립식품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가 시행하는 “농축산업 창업개발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짐.
 - 대상: 영농경력 10년 이내인 농축산업 종사자
- USDA 차관 Kathleen Merrigan 발언 내용:
 - 농업 부문에 새로이 종사하는 농업인은 생소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수익성 있는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번 예산 지원을 통해 제공될 교육 및 훈련은 차세대 영농인들의 성공을 보장하고 이들이 지역 주민, 나아가 전세계의 식량을 공급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임.
- 한편, 이번 지원은 USDA가 시행하는 “생산자를 알고, 식품을 알자.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계획의 일환임.
 - 본 계획은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9. 9월에 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농업관련 주요 이슈들을 포함함.
 - 지역의 농업인 지원, 지역 공동체 강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건강한 식생활 촉진, 자연자원 보호, 학교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공급 등